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
----------	-----

제출년월일 : 2002. 2. 1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며,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보완(안 제1조)
-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12조)
-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개정  
(안 제15조의1,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세회13400-3690 2001.12.28)

라. 입법예고 : 필요 없음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5조의1중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의2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를 “통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창군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u>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창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u>따라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u>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u>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u> ----- ----- ----- ----- ----- -----</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u>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u></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 ----- ----- ----- -----<u>종합토지세과</u> <u>세표준액</u>-----.</p>
<p>제12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u>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u></p>	<p>제12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u>농어촌특산품</u> <u>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u>----- -----</p>

현 행	개 정(안)
<p>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단서 생략)</p> <p>②·③ (생략)</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1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p> <p>(단서 생략)</p>	<p>제15조의1(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p> <p>-----</p> <p>----- 통</p> <p>보-----</p> <p>-----</p> <p>-----</p> <p>-----</p> <p>-----</p> <p>-----</p> <p>-----</p> <p>-----</p> <p>-----</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안)
<p>제15조의2(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제15조의2(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12조제1항----- -----통보-----</p>
<p>1.~3. (생략)</p>	<p>1.~3.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다. 한센병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시장 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전화 033)249-2881 /전송 033)249-4081  
 세무회계과 과장 : 손호경 담당 : 최준승 담당자 김태영

문서번호 세회 13400-3690

시행일자 2001.12.28 ( )

공개여부 ( 공개 )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결	과장	손호경	지시	
접수	일자	2001. 12. 28	결재	김태영
	시간			최준승
처리과	번호	389	공람	김우현
	제부과	세무과		홍근
담당자	김태영			
심사자			심사일	

##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 및 일반조례 개정안 송부

1.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 표준안"을 이첩하여 류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당해 시군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선정 개정하여 주시고

2. 아울러, 2001년도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시군세조례중 개정하여야 할 자료도 함께 송부하니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윈로원).

- 붙임 : 1)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 강 원 도 지



수신처:더(01-07) 더(08-18)